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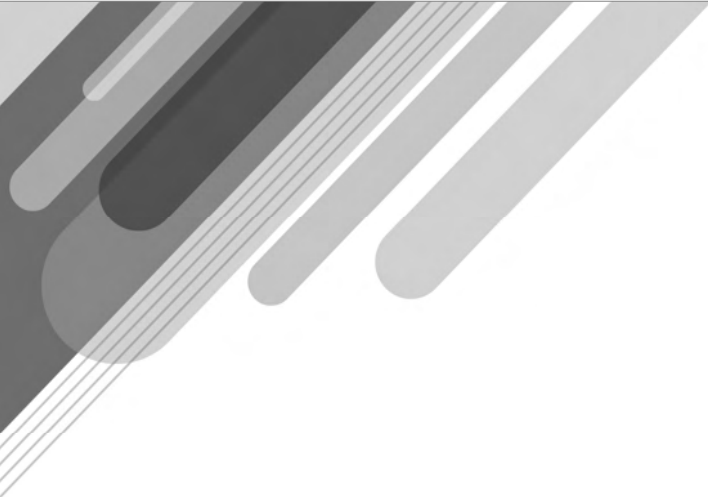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

- ❖ 일자 : 2025년 8월 28일(목)
- ❖ 장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부산)



해양수산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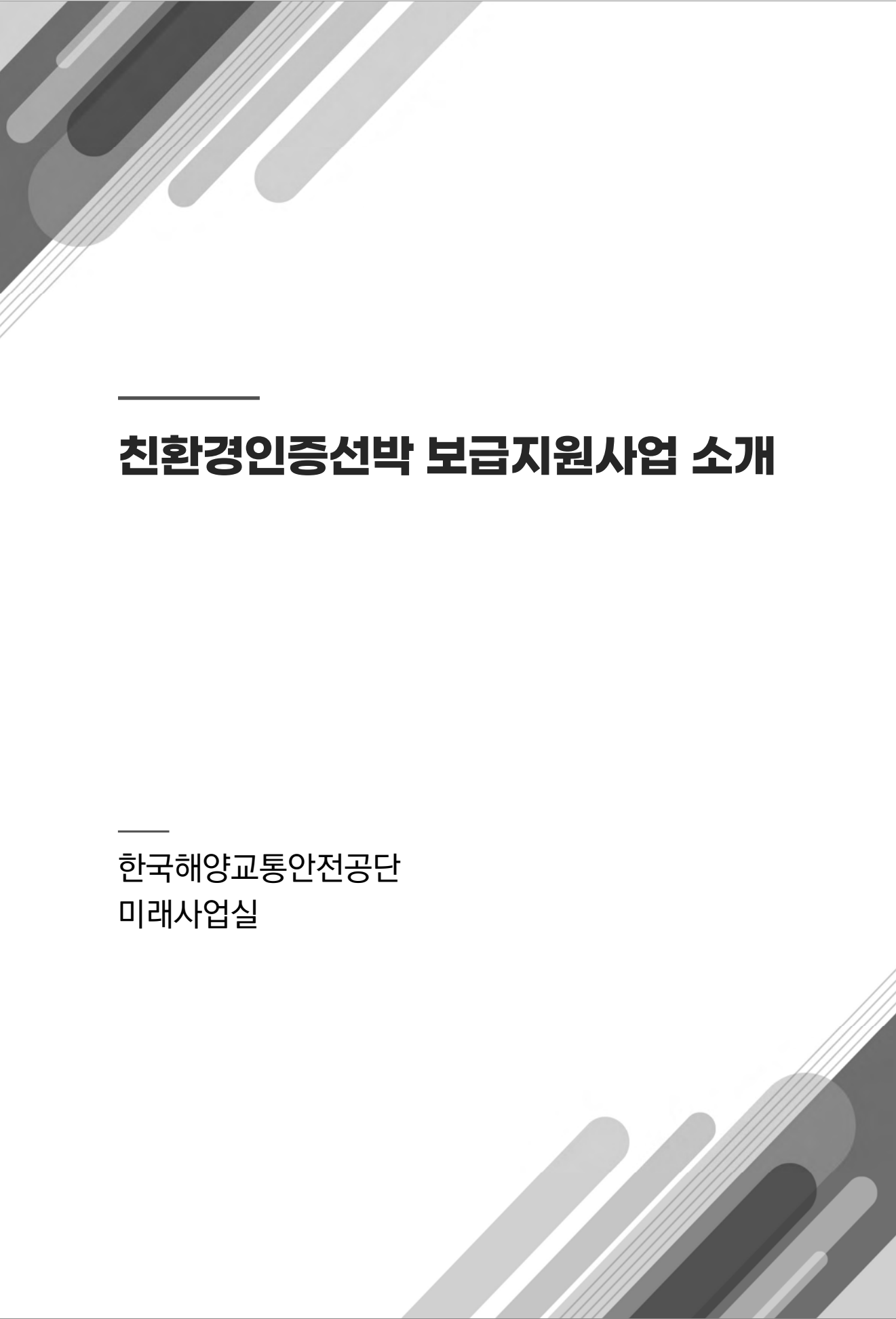


친환경선박 보급 국가정책 소개

[현장설명]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소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소개



2025. 8. 28.(목)

KOMSA 미래사업실
방민규 실장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발표 순서

- 01 사업 개요
- 02 신청 절차
- 03 보조금 관리
- 04 지원대상자 의무
- 05 실적소개
- 06 자주하는 질문들



1 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2. 신청절차
- 3. 보조금 관리
- 4. 지원대상자 의무
- 5. 실적소개
- 6. 자주하는 질문들

법령 근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선박법」 제10조)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 기준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2. 신청절차
- 3. 보조금 관리
- 4. 지원대상자 의무
- 5. 실적소개
- 6. 자주하는 질문들



사업 목적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을 확산



지원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선박의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2등급 기준 최대 36억원)을 차등 지원*

* 건조가격 25억원 이하(2등급기준) : 최대 선가의 1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등급기준) : 최대 선가의 9.5%,
...
8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2등급기준) : 최대 선가의 3.5%
1,000억원 초과 1,200억원 이하(2등급기준) : 최대 선가의 3.0%

1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신청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유선사업, 도선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 어업, 어획물운반업, 양식업, **선박용천연가스사업**

*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1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 출처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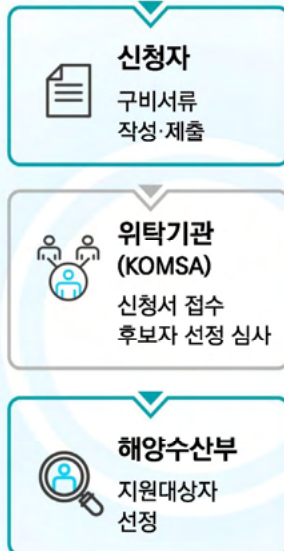
신조선 선가	1등급 보조율	2등급 보조율 (기준 보조율)	3등급 보조율	예시	신조선 선가	1등급 보조율	2등급 보조율 (기준 보조율)	3등급 보조율	예시
25억원 이하		10%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6.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5%		
50억원 초과 75억원 이하		9.0%			5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5.0%		
75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선가 x 선 가별 기준 보조율 x 110%	8.5%	선가 x 선 가별 기준 보조율 x 90%	선가 : 120억원 인증등급 : 2등급 → 보조금 : 9.6억	6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선가 x 선 가별 기준 보조율 x 110%	4.5%	선가 x 선 가별 기준 보조율 x 90%	선가 : 440억원 인증등급 : 2등급 → 보조금 : 24.2억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8.0%		선가 : 230억원 인증등급 : 1등급 → 보조금 : 17.71억	7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4.0%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7.5%			8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5%		
2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		7.0%			1,000억원 초과 1,200억원 이하		3.0%		선가 : 1,300억원 인증등급 : 2등급 → 보조금 : 36억
2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6.5%							

- 선가가 1,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가 1,200억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함
-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에 따라 최대 보조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구간 150억원 이하는 최대 보조율 10%(2등급 기준),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는 최대 보조율 20%(2등급 기준), 300억원 초과하는 최대 보조율 30%(2등급 기준)로 할 수 있음

2 신청 절차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신청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¹⁾에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공고문을 숙지 후 구비서류²⁾ 작성 제출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 신청서 제출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³⁾ 제출

- 1) 홈페이지 주소 : www.komsa.or.kr → 소식 → 공지사항
- 2)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 계획서, 예비인증서, 신용평가등급, 건조계약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등
- 3) 온라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친환경선박.kr)을 통합 접수
오프라인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e-mail 접수는 받지않음)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7

2 신청 절차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사업신청 프로세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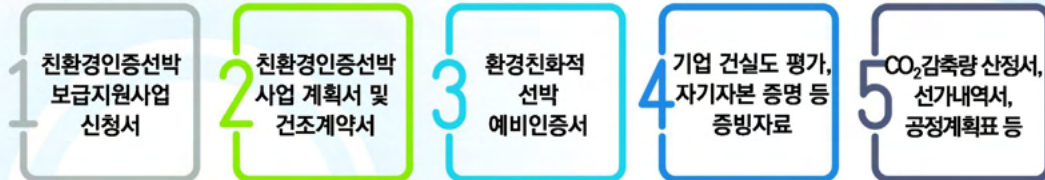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8

2 신청 절차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사업신청 구비서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KOMS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준비(공고문 확인)



지원대상자의 의무(상세:12p)

- 공정계획표 및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함(건조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필요)
-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안됨
-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건조 공정이 지연될 경우 증권기간 연장 필요)

2 신청절차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

※ 출처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2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평점																																									
신조선박 친환경도 (40)	40점	□ 신조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예비인증서의 등급) <table><tr><td>등급</td><td>1</td><td>2</td><td>3</td></tr><tr><td>점수</td><td>40</td><td>33</td><td>26</td></tr></table>	등급	1	2	3	점수	40	33	26																																		
등급	1	2	3																																									
점수	40	33	26																																									
기업 건설도 (20)	2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 <table><tr><td>구분</td><td colspan="4">신용평가구간</td></tr><tr><td>구간</td><td>1~2</td><td>3~4</td><td>5~6</td><td>7 이하</td></tr><tr><td>점수</td><td>20</td><td>15</td><td>10</td><td>5</td></tr></table>	구분	신용평가구간				구간	1~2	3~4	5~6	7 이하	점수	20	15	10	5																											
구분	신용평가구간																																											
구간	1~2	3~4	5~6	7 이하																																								
점수	20	15	10	5																																								
사업계획 타당성 (40)	4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table><tr><td rowspan="2">평가항목</td><td colspan="5">평가점수</td></tr><tr><td>우수</td><td>적합</td><td>보통</td><td>미흡</td><td>평점</td></tr><tr><td>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td><td>8</td><td>6</td><td>4</td><td>2</td><td></td></tr><tr><td>자기자금 조달방안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td><td>8</td><td>6</td><td>4</td><td>2</td><td></td></tr><tr><td>선가내역서의 타당성</td><td>8</td><td>6</td><td>4</td><td>2</td><td></td></tr><tr><td>선박건조 공정계획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td><td>8</td><td>6</td><td>4</td><td>2</td><td></td></tr><tr><td>온실가스 감축 기여도</td><td>8</td><td>6</td><td>4</td><td>2</td><td></td></tr></table>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8	6	4	2		자기자금 조달방안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8	6	4	2		선박건조 공정계획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8	6	4	2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8	6	4	2																																								
자기자금 조달방안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8	6	4	2																																								
선박건조 공정계획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8	6	4	2																																								
가점	-	□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5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또는 발전기 등 국내법인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산업기술보호법」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조선분야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단, 동일한 기술 및 제품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 즉, 하나의 제품이 위 3개의 가점에 해당할 시 가점은 1개(5점) 적용																																										
감점	-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최대 3점)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5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보조금 관리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보조금 교부절차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시기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예산현황, 보조금 교부신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 보조금 집행 : 선박건조 공정률에 따라 집행
(예시) 보조금 10억원, 공정률 25% → 2.5억원 집행가능
보조금 10억원, 공정률 80% → 8억원 집행가능(집행누적액 7억원 → 1억원 집행가능)
- 보조금 잔금 집행 : 친환경선박 (본)인증서 제출 이후 조선소 잔금과 함께 집행
- 보조금 정산 : 사업기간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1

4 지원대상자 의무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참고

-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증권기간 : 선정일자 ~ 선박건조 및 사업비 정산 완료 시점까지)
-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등록 및 보조금 관리(교부, 집행, 정산 등)
- 월간 실적보고서(마스터 스케줄(공정률 포함), 사진 대지, 대금 납부내역 등) 제출

〈 선박건조 완료 이후 〉

- 선박인도 후 최소 7년간 매각금지 : 매년 선박등기부등본 제출
- 필요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파악을 위한 서류(유류사용량, 전력사용량 등) 제출

〈 일반사항 〉

-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건조일정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및 심사 필요
- 보조금 집행 전 담당자 검토 이후 집행 필요(집행 가능 금액 산정을 위함)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2

5 실적소개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1. '21년도 지원선박 : 3척

면허	선사	적용 기술	총톤수 (G/T)	건조 비용	친환경 인증등급	건조일정
유선	A선사	전기추진	55톤	15억	2등급	건조완료
도선	B선사	전기추진	436톤	90억	1등급	건조완료
예선	C선사	하이브리드	398톤	82.2억	3등급	건조완료

2. 현황



A선사



B선사



C선사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3

5 실적소개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3. 보조금 관리
4. 지원대상자 의무
5. 실적소개
6. 자주하는 질문들

1. '22년도 지원선박 : 5척

면허	선사	적용 기술	총톤수 (G/T)	건조 비용	친환경 인증등급	건조 일정
도선(예정)	A선사	전기추진	300톤	67억	2등급	건조중
예선	B선사	LNG추진	320톤	100억	2등급	건조완료
예선	C선사	하이브리드	391톤	95억	3등급	건조완료
유선	D선사	전기추진	150톤	82억	2등급	건조완료
예선	E선사	하이브리드	393톤	101.3억	3등급	건조완료

2. 현황



B선사



C선사



E선사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4

5 실적소개

- 1. 사업개요
- 2. 신청절차
- 3. 보조금 관리
- 4. 지원대상자 의무
- 5. 실적소개
- 6. 자주하는 질문들

1. '23년도 지원선박 : 6척

면허	선사	적용 기술	총톤수 (G/T)	건조 비용	친환경 인증등급	건조 일정
항만운송	A선사	하이브리드	24톤	17.5억원	3등급	건조완료
유선	B선사	전기추진	16톤	55.6억원	1등급	건조완료
도선	C선사	하이브리드	169톤	47억원	3등급	건조완료
도선	D선사	하이브리드	169톤	47억원	3등급	건조완료
도선(예정)	E선사	하이브리드	150톤	47억원	3등급	건조 중
도선(예정)	F선사	하이브리드	150톤	47억원	3등급	건조 중

2. '24년도 및 '25년도 지원선박 : 8척

면허	선사	적용 기술	총톤수 (G/T)	건조 비용	친환경 인증등급	건조 일정
내항화물운송(예정)	A선사	하이브리드	200톤	70억원	3등급	건조 중
예선	B선사	하이브리드	390톤	108.4억원	3등급	건조 중
도선(예정)	C선사	전기추진	450톤	137억원	2등급	-
도선(예정)	D선사	전기추진	450톤	137억원	2등급	-
내항화물운송(예정)	E선사	LNG추진	11,600톤	1,224억원	3등급	건조 중
내항화물운송	F선사	메탄올추진	5,030톤	295억원	2등급	-
내항화물운송	G선사	메탄올추진	5,030톤	299억원	2등급	-
내항화물운송(예정)	H선사	LNG추진	17,800톤	1,268억원	2등급	-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5

6 자주 묻는 질문들(FAQ)

- 1. 사업개요
- 2. 신청절차
- 3. 보조금 관리
- 4. 실적소개
- 5. 지원대상자 의무
- 6. 자주하는 질문들

1. 에너지 충전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선박 운영에 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도 지원이 가능한지?

-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만 지원 가능

3. 외항선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외항선(외항화물운송사업자)은 본 사업 신청대상이 아니며, 해양진흥공사에서 운영중인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함

4. 지원사업 신청 시 (예비)인증서는 추후 제출해도 되는지?

- 사업신청의 전제조건은 친환경선박 (예비)인증이기에 반드시 (예비)인증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2025년도 공고시점은 언제인지?

- 1차 공고는 상반기에 진행하였으며, 2차 공고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세부 일정은 미정)

6. 신청 선사가 많은 경우에는 최종 지원선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순위 확정 후 최종 지원선박 선정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6

6 자주 묻는 질문들(FAQ)

- 1. 사업개요
- 2. 신청절차
- 3. 보조금 관리
- 4. 실적소개
- 5. 지원대상자 의무
- 6. 자주하는 질문들

7. 사업 공고일 이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종 선정된 이후 연내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지원 대상 아님.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가 지원 대상임

8. '23년도에 건조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선박건조는 '24년도(전년도)에 시작한 경우, '25년도 공고에 지원이 가능한지?

- 사업 신청시 최초에 체결한 건조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23년도(전전년도)에 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5년 사업공고 지원대상 아님(건조계약일 기준)

9. 지원선박 담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지원선박 감정평가액 및 선박 건조에 투입된 총 사업비가 명시된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 승인 한도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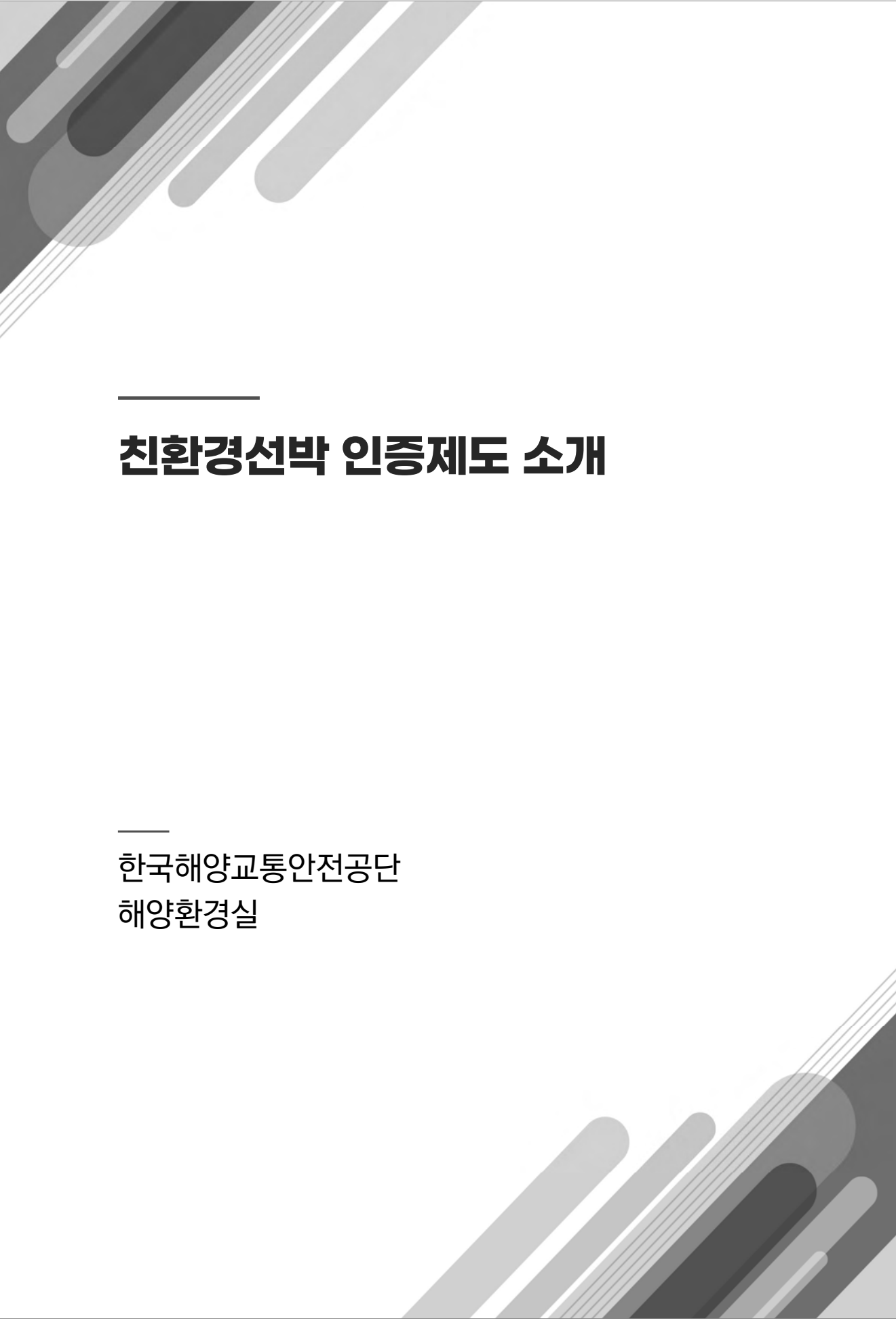
10. 사업 초기자금 집행시 자부담금보다 보조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

- 보조금은 공정률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 공정률을 초과하는 집행은 불가능함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7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감사합니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소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소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 08. 28.

해양교통본부
해양환경실장 이경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발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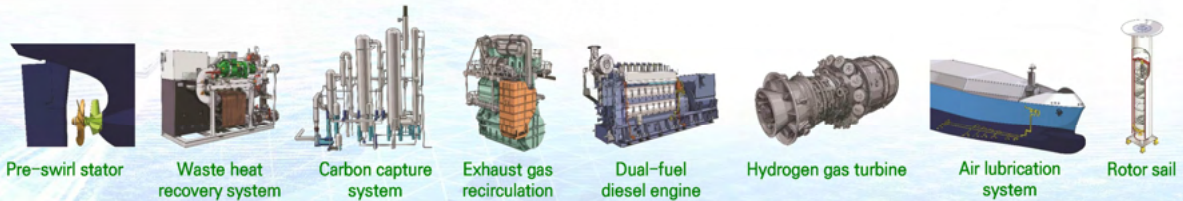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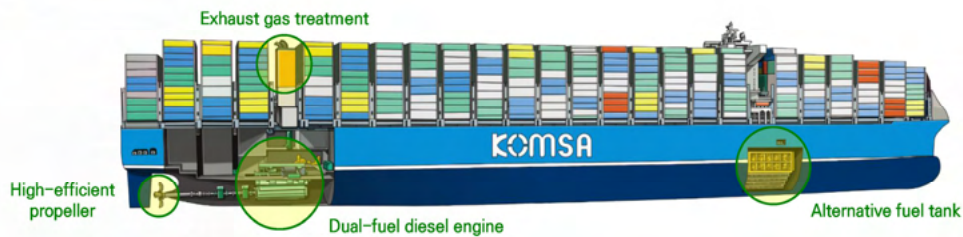
1.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정의
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3.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제도

01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정의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정의
 -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 정의
 -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

01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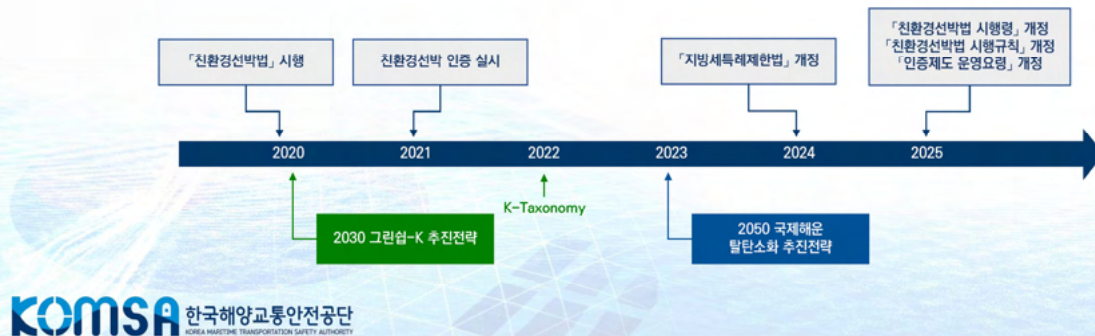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주요 기술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목적과 활용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운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8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선박**에 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
-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자에게 **인증등급(1~5등급)**을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국내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및 친환경해운 생태계 조성**
- 인증등급을 근거로 **민간사업자**는 신규 선박 건조 시 **국고보조금, 녹색금융, 취득세 감감 등 신청 가능**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서 활용처

- (국고보조) 인증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신규 발주하는 경우 **건조자금의 10%까지 지원**
 - ✓ (연안·내수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도선사업자, 예선업등록자, **항만용역업, 선박용료공급업,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 건조자금 최대 10%까지 지원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21~)**
 - ✓ (국제항해)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건조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23~)
 - (녹색금융) K-Taxonomy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의 경우 **녹색금융 지원**
 - ✓ KDB산업은행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원화 연 $\Delta 1.7\% \text{p}$ 이내)
 - * 중견기업 연 $\Delta 2.5\% \text{p}$ 이내, 중소기업 연 $\Delta 2.6\% \text{p}$ 이내
 - ✓ 한국수출입은행 '녹색금융활성화 프로그램'(최대 $1.0\% \text{p}$ 이내)

[illegible]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서 활용처

-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인증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감**
 - ✓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을 원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 1천분의 20.2(2.02%)
 - ✓ 인증등급에 따른 취득세 감감률
 - 친환경선박 인증 1등급: 1천분의 20(2.0%p) 감감
 - 친환경선박 인증 2등급: 1천분의 15(1.5%p) 감감
 -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1천분의 10(1.0%p) 감감
- (이자지원) 인증 4등급 이상 선박에 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
 - ✓ 외항 및 내항선사 대상 KOBC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2%p)

(예) 1,000억원(취득가액=과세표준)인 선박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정금액은 20.2억원(1,000억원 × 2.02%)이며, 인증등급에 따른 취득세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음

- 1등급: 1,000억원 × 0.02% = 0.2억원
- 2등급: 1,000억원 × 0.52% = 5.2억원
- 3등급: 1,000억원 × 1.02% = 10.2억원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인증 신청 가능**
-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전환하는 **조선업자도 인증 신청 가능**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등의 신청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 등

■ 기대 효과

- 인증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인증 신청수요 증가 예상
- 친환경 공공선박의 인증이 가능해져, 「친환경선박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이행 확인 가능
- 국가로부터 친환경선박의 건조·개조 실적 등을 인증 받아 홍보 활동에 활용 가능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규칙 개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5.8.21)으로, 누구든지 인증 신청 가능

- 주요 개선사항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기준에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허용값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허용값을 추가함
 - 인증 신청자격은 (기존)내항화물운송사업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서 (개선)환경친화적 선박 보유자·보유하려는 자 및 조선업자로 확대함 →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인증 가능하고, 친환경 공공선박도 인증 가능
 - 인증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함
 - 불가피한 설계 변경 시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본인증이 가능함
 - 인증서 서식은 (기존)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에서 (개선)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및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로 분리하여 개선함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 (인증대상 확대) 선박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기자재까지 인증대상 확대
 - (용어의 정의) 환경친화적 선박,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자, 인증기관 등 필요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 (인증기준)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훼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인증 신청 반려) 인증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재평가 방법) 인증 심사·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자문위원회)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내용 검토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
 - (인증표시)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 인증을 받은 자가 홍보 등을 위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제도 운영요령(인증기준) 개정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전부개정(2025.2.20)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 인증 심사·평가 확대

■ 주요 개선사항

- 선박 인증 심사·평가는 (기존)환경친화적 선박 평가위원회가 아닌 (개선)인증기관이 수행함
- 메탄올 배점이 상향(기존)35점 → (개선)45점)되어, 인증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
- 추진동력원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배점 20점 부여
- 선박의 인증등급(3~5등급)의 하한점수가 5점씩 상향됨
-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자재 심사·평가 전 성능증명 절차를 두어 선급기관 또는 KOLAS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함
- 인증된 기자재를 선박 인증 심사·평가에 적용할 경우 인증 점수 산출 시 가산점을 부여함
- 인증 받은 선박 및 기자재는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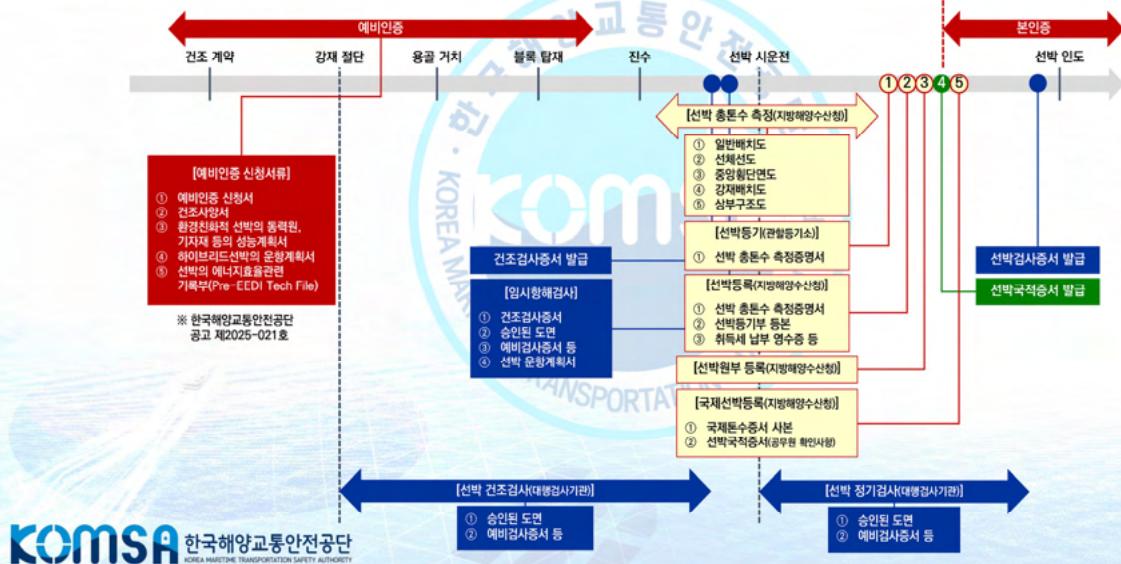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업무 흐름도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업무 흐름도



12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인증 신청서류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의 신청서류 공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5-021호)”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 확인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https://www.komsa.or.kr> - 공지사항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의 신청서류 공고”)
 - ✓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https://www.친환경선박.kr> - “친환경선박 인증”)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구비서류	-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 건조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 전환하려는 계획서로서, 건조사양서 또는 개조사양서(개조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별첨 1) - 하이브리드선박의 운항계획서(별첨 2) - 선박의 에너지효율관련 기록부(Preliminary EEDI Technical File) - 그 밖에 예비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추가 요청하는 서류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서(“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하이브리드선박의 운항계획서(별첨 2) - 선박국적증서 또는 국제선박등록증 - 그 밖에 본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추가 요청하는 서류

13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A) 친환경선박 기술난이도 및 연료사용 비중 점수

➤ 점수 = $F_1 \times \text{연료사용률}_1 + F_2 \times \text{연료사용률}_2 + \dots$

- ✓ (F_N) 여기서 F_N ($N = 1, 2, \dots$)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액화가스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기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또는 가스운반선의 경우에는 구분의 F의 75%만 반영한다.

구분	화석연료	LNG, LPG 등	배터리 전기추진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F	25	35	40	45	50

- ✓ (연료사용률)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연료를 에너지열량단위(kcal)로 환산한 비율이며, 휘발유, 경유, B-C유의 최대 사용률은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이브리드선박이 전기에너지를 30%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 경우에는 전기에너지(kWh)의 사용 예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연료탱크부피) 해당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부피(L)를 반영하고, 액화가스화물창에서 발생하는 기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한 액화천연가스(LPG)운반선 또는 가스운반선의 경우에는 액화가스화물창의 부피를 반영한다.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B)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에 따른 점수

- 추진 동력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 저감률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 추진 동력원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20점을 배점한다.

구분	저감률	점수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선박오염방지규칙」 별표 19, 2호의 설비	Tier 2 대비 저감률 15% 이상 30% 미만	2
	Tier 2 대비 저감률 30% 이상 40% 미만	4
	Tier 2 대비 저감률 40% 이상 Tier 3 미만	6
	Tier 3 충족	10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저감률 60% 이상 70% 미만	6
	저감률 70% 이상 80% 미만	7
	저감률 80% 이상 90% 미만	8
	저감률 90% 이상	10

0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C)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따른 점수

- 「선박오염방지규칙」 별표 20의3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대비 초과 감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 ✓ (계산방법) 초과감축률 = [(“EEDI 허용값” - “EEDI 계산값”)/EEDI 허용값] x 100%
 - ✓ (점수산정) 초과감축률에 따른 점수산정은 아래 표와 같다.

초과감축률	점수
10% 이상 20% 미만	10
20% 이상 25% 미만	15
25% 이상 30% 미만	18
30% 이상	20

국산화비율	점수
80% 이상	10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9
20% 이상 40% 미만	4
20% 미만	2

- (D) 제품 국산화에 따른 점수

- 친환경설비별 적용되는 항목의 전체단가 대비 국산화제품의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

03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제도

- 목적과 활용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8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
- 친환경기자재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 국내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및 친환경해운 생태계 조성

- 인증 대상 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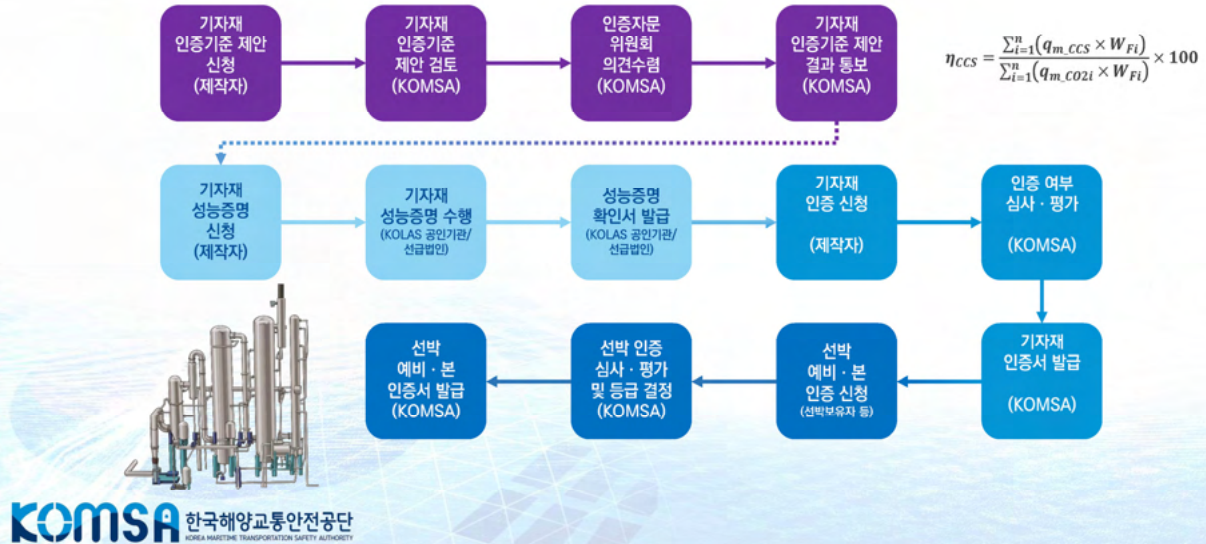
- ①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②보일러, ③폐열회수장치, ④CO₂ 포집 시스템, ⑤인버터, ⑥전동기

- 인증기준 제안 가능

- 인증 대상 기자재 6종 외에 대하여 제작자는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음

03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제도

■ 인증업무 흐름도



20

03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제도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구분	지표	기준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CO ₂ 배출량	중속 내연기관	600 g/kWh 이하
		고속 내연기관	650 g/kWh 이하
보일러	보일러 열효율(η)	87% 이상	
폐열회수장치	주기관 정격출력 대비 순출력(P_{net}) 비율 (% of main engine power)	증기 터빈(Steam Turbine), 파워 터빈(Power Turbine), 증기 및 파워 터빈(Steam & Power Turbine) 방식	4% 이상
		유기 냉매 랭킨 사이클 (Organic Rankine Cycle) 방식	8% 이상
CO ₂ 포집 시스템	CO ₂ 포집 시스템의 효율(η_{CCS})	85% 이상	
인버터	인버터 효율	97% 이상	
전동기	전동기 효율등급	IE3 이상	

21

감사합니다.

해양환경실
(greenship@komsa.or.kr)